

제 4 장 주주총회

제17조 (구분 및 소집시기)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<개정 2019. 3. 27.>

제18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-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
제19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10. 21.>
- ② <삭제 2020. 5. 6.>

제20조 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21조 (의장)
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,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
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
제22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
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
을 명할 수 있으며,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23조 (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24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
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
지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
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5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①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
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03. 10. 21.>

② 전항의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
제26조 (의결사항)

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이사의 선임과 해임 <개정 2000. 3. 17.>
2. 이사의 보수지급한도 <개정 2000. 3. 17.>
3. 결산의 승인
4. 정관의 변경
5. 회사의 합병 및 해산
6. 기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
② 해외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거래되도록 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회사는 관계 감독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1999. 10. 1.>

제26조의2 <삭제 2003. 10. 21.>

제27조 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

①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이사의 해임 <개정 2000. 3. 17.>
3. 자본의 감소
4. 회사의 합병 및 해산
5.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6.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 <신설 2003. 10. 21.>
7. <삭제 2004. 3. 26.>
8.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<개정 2000. 3. 17.>

③ <삭제 1998. 8. 28.>

제27조의2 (집중투표)

이 회사의 이사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1999. 10. 1.>

제28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 및 지사에 비치한다.